



일본 지자체의 치매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제공과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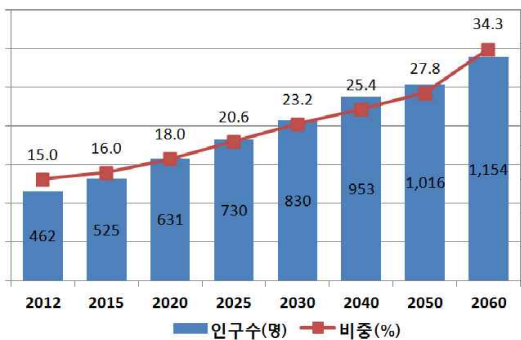
연구

일본은 치매¹⁾환자가 입힌 물적손해 사고에 대하여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환자가 주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최근 그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송사례는 일본과 법률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치매환자 간병이 개인과 가족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에 의한 물적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치매 고령자 증가와 최고재판소 판결의 영향으로 치매 고령자가 일으킨 물적손해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함

● 일본은 치매 고령자 수가 <그림 1>과 같이 2012년 462만 명(65세 이상 7명 중에 1명)에서 2025년 730만 명(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14.5조 엔²⁾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1> 일본 치매 고령자 수 전망



자료: 内閣府(2017), 高齢社会白書

<그림 2> 일본 치매에 의한 실종자 수



자료: 警察庁(2017), 警察統計

1) 올바른 용어는 인지증이지만 편의상 치매로 호칭함(성윤환 의원 등 11인(201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NHK스페셜(2017. 3. 26), 認知症社会・誰もが安心して暮らすために

- 치매 실종자 수도 <그림 2>와 같이 최근 증가하여 2016년 약 1만 5천 명이 실종됨
-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아마토시(大和市)가 2017년 11월 처음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 배경은 치매 고령자에 의한 타인의 물적 손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치매 고령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최고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받음
- 사건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이 91세 치매 환자 남성 A씨가 전철 선로에서 배회중 전철에 치여 사망하면서 발생한 피해복구비와 출근시간 대체교통 비용을 전철회사가 감독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³⁾

<표 1> 최고재판소 심판 치매 고령자 전차 피해사건 주요 내용

핵심 내용	주요 내용
사고 경위	- 지난 2007년 12월 아이치현 오부시에 거주하는 91세의 치매에 걸린 남성 A씨가 새벽에 자택에서 부인이 잠시 잠든 사이 혼자 돌아다니다 열차에 치여 사망 - 가족은 사고시점 간병 투병중인 동거 부인과 지방에서 10년 이상 별거하는 장남임
피해 사실	- 피해복구 비용 및 아침 출근시간에 대체교통 비용 발생
청구 금액	철도회사 JR동해는 A씨 유족을 대상으로 720만 엔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료: 厚生労働省(2016. 5. 31), 最高裁判所平成28年3月1日判決要旨를 요약

- 일본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민법」상 치매 등에 의해 책임 무능력자⁴⁾의 감독책임 의무⁵⁾가 있는 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액을 배상할 것을 판시함
- 1심 나고야 지방재판소⁶⁾는 A씨 부인에게 졸음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장남에게 별거중이라도 사실상 감독자로서 아버지의 배회 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720만 엔의 전액 배상판결을 내림
- 2심 나고야 고등재판소⁷⁾는 장남의 감독책임 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A씨 부인에게 감독책임과 전철회사의 감시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A씨 부인에 대해 360만 엔의 지급을 판결함⁸⁾

3) 厚生労働省(2016. 5. 31), 最高裁判所平成28年3月1日判決要旨

4)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번식할 자능이 없는 자

5) 일본 「민법」 제714조 제1항은 책임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함

6) 名古屋地方裁判所判例 平成25年8月9日

7) 名古屋高等裁判所判例 平成26年4月24日

8) 일본 언론은 2심 결과에 대해 “간병현장의 충격적 판결”, “치매 환자가족 파산”, “2심이 치매 고령자를 24시간 감시하고 길 거리를 배회하지 못하도록 결박 또는 방에 감금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함(読売新聞 2016. 3. 9)

- 그러나, 2016년 최고재판소⁹⁾는 A씨 부인과 장남에게 치매 고령자의 감독의무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가족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함¹⁰⁾
 - 최고재판소는 A씨의 감독의무자를 치매 환자 심신상태와 간병상태, 가족과 동거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
 - 이에 최고재판소는 A씨 부인의 경우 85세, 거동이 불편한 간병상태이고 장남의 경우 2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동 판결에 따라 일본에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손해 사고를 입힐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일본 사회에 확산됨
 -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치매 고령자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함

- 대표적으로 가나가와현 아마토시는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치매 고령자가 지역주민에게 입힌 물적피해 사고를 구제하는 고령자개인배상책임보험사업을 2017년 11월에 처음으로 실시함¹¹⁾
 - 아마토시가 계약한 보험상품은 개인배상책임보험부 상해보험특약임
 - 가입 대상은 아마토시가 실시하는 치매 고령자 보호 복지제도에 가입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1인당 연간 약 6천 엔을 아마토시 예산으로 부담함
 - 보장내용은 치매 고령자가 제3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치매 고령자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최대 3억 엔 한도의 손해배상금과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300만 엔), 입원보험금을 지급함

- 이외에 현재 아이치현 오부시(2018. 6),¹²⁾ 이바라기현 코야마시(2018. 6), 가나가와현 에비나시(2018. 7), 후쿠오카현 쿠루메시(2018. 10)로 확산되고, 효고현 코베시¹³⁾가 2019년에 시행할 예정임
 - 일본 지자체들은 지역 내 치매 고령자 보호 복지제도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동

9) 最高裁第三小法廷 平成28年3月1日 判決

10) 최고재판소는 본건 발생한 시점에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여 치매 고령자 등의 정신장애자와 동거하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11) 大和市記者会見資料(2017. 8. 24)

12) 한자 지명은 愛知県 大府市(이하 동일) 栃木県 小山市, 神奈川県 海老名市, 福岡県 久留米市, 兵庫県 神戸市 임

13) 고베시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함

안 치매 보호 복지제도¹⁴⁾ 가입에 부정적이던 치매 고령자와 그 가족의 인식을 개선시켜 향후 지자체가 실시하는 등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도 최근 치매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고령자가 타인에게 물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민법」도 일본과 유사하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감독책임 의무에 대한 가족을 배제한 일본 판결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이 경우 제3자가 치매 고령자로부터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치매 고령자에 대한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의 판결사례는 재택요양 시 가족이 치매 고령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경우 치매 고령자 보호가 가족만의 부양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함

- 우리나라도 최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고령자 부부만이 동거하는 고령자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우자가 치매에 걸릴 경우 노령의 배우자의 힘만으로 치매 고령자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치매 고령자 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2017년 약 70만 명¹⁵⁾에 이르고 연간 1만 명 이상¹⁶⁾의 고령자가 실종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일본의 사례는 치매 고령자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도 기본적 간병은 가족 중심으로 부양하되,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향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치매환자 실종방지 등 정부의 치매환자 케어서비스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ri](#)

14) 치매 검사, GPS 기기 부착, 지문등록, 실종 또는 길거리徘徊 시 조기발견 케어, 치매 고령자 운전면허 자율 반납 등

15) 중앙치매센터(2017),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으로 전망함

16) 경찰청(2018)